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7호로 2024년 5월 31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6조~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일 수 연장(안 제6조)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5. 16.~ 5. 21.):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 전체에서 절차 중 “예산편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확대함.
 -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함.
 -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연령대별 인원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1)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11.7.18. 제정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까지임.

- 한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18.3.27. 개정되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넓힌 바 있고, 이번 일부개정은 이러한 기초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²⁾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임.

- 아울러, 위원회 구성은 성별·연령대 비율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며,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³⁾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2) 강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3)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